

인도네시아 新特許法

1. 머리말

인도네시아 특허법이 의회에 상정되어 심사의 결과 의회를 통과하여 법률로서 성립되어 '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특허법안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89년 10월 13일에 의회를 통과하여 1989년 11월 1일부로 공포되어 7개월후인 1991년 8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

原案과 다른 점으로 주요한 점은 특허기간이 출원으로부터 15년간 (3년간 기간 연장)에서 출원으로부터 14년간(최고 5년간 기간연장)으로 단축된 점과 시행일이 7개월뒤로 늦추어져 1991년 8월 1일로 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허법의 원안에는 불명확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후 제정되는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하에 신평특허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지만 의문점과 보호의 불충분한 점도 많다. 그러나 특허법이 제정된 점으로 우선은 환영하는 것과 동시에 서서히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2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발명

「특허는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적 활동을 포함한 신규한 발견에 부여되어 진다. 여기에 예기 되어진 사항을 포함한 발명은 발명적 활동을 포함한다.(제2조)」라고 정의 하고 있다. 신규성에 대하여는 국내외에의 간행물 공지, 인도네시아 국내의 공지공용으로 되어져 있다 (제3조).

3. 불특허발명

음식물 및 그 원료·제조방법, 동식물 및 양식육성방법, 인간·동물에의검사·치료·수술방법, 과학·수학의 분야에 있어서 이론·방법 등을 열거하여公序良俗 및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들을 들고 있다(제7조).

또 대통령령에 의해 5년을 한도로 하여 특허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발명의 분야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제8조).

4. 특허기간

특허기간은 특허출원일로부터 14년(제9조)으로 되어 있지만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2년간의 연장이 가능하다(제42조). 또 특허로부터 획득된 수입이 연구개발 비용의 회수에 불충분하고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실시의무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3년간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제43조).

5.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별한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면 고용자가 특허 출원인이 되는 것이 규정 되어져 있다(제13조). 다만 타당한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또, 특허 출원시 이미 그 발명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은 선발명자로 하여 그 발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제14조).

6. 특허권자의 권리와 의무

물의 특허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 임대, 이전, 사용, 판매·임대·이전을 위한 공급, 방법 특허에 대해서는 물의 제조 그 밖의 권리가 있다(제17조). 보통 인도네시아 국내에 있어서의

실시의무도 명시되어져 있다(제18조). 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은 등록할 필요가 있고(제79조), 특허권자, 라이선스 취득자의 년금 지불 의무도 규정되어 있다(제19조).

7. 특허권의 예외

수입행위는 특허의 실시로 보지 않으며(제20조), 특허침해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다(제21조).

8. 특허출원

특허출원에 있어서 외국 거주자는 인도네시아의 특허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해야만 한다(제28조). 출원시에 첨부되는 첨부서류·기재내용등의 개요는 특허법에 규정되어져 있지만 상세한 것은 출원료, 대리인의 자격 등과 함께 실시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제30조).

9. 출원공개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또는 제일국 출원으로 부터 12개월이내에 출원이 된 것을 공시하여 6개월간 공개된다(제47조). 공개 기간동안 특허출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라도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다(제51조).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특허국은 그 사본을 특허출원인에 송부하고, 특허출원인은 이것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제51조). 또한 국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특허출원은 공개되지 않는다(제52조).

10. 심사

실체심사의 청구는 특허 출원으로 부터 3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제56조). 그 비용과 양식은 아직 미정이다. 심사는 특허국의 심사관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의 공무원이 담당한다(제59조). 심사는 심사청구가 되고 나서 24개월이내에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져 있다(제61조). 특허출원이 특허법의 제2, 3, 5조(진보성, 신규성, 산업상의 이용성)의 규정에 합치되고, 公序良俗에 저촉되지 않으면 특허국은

특허증을 발행한다(제64조).

11. 심 판

특허출원의 거절에 대한 불복의 경우는 거절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특허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68~70조). 특허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심결해야 한다(제71조). 절차에 대한 상세한 것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진다(제72조).

12. 특허권의 이전

특허권의 이전은 가능하지만, 특허국에 신고하여 등록원부에 등록되어야만 한다(제73조).

13. 라이선스

인도네시아의 경제,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염려가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은 금지되어 있고(제78조), 라이선스계약의 특허국에의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제79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라이선스 계약의 등록은 거절되어진다(제78조).

14. 강제실시권

特許許與로부터 36개월을 경과하여 인도네시아에서 특허가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는 누구라도 지방재판소에 라이선스의 특허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제82조). 특허 조건에 대한 개요는 규정되어 있지만 특허기간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제82조).

또한 제3자의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는 자기의 특허를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강제실시권을 요구할 수 있다(제88조). 그 경우에는 자기의 발명이 실제적으로 제3자의 발명보다 진보된 발명이어야만 한다(제88조). 상황의 변화에 의해 강제실시권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지방재판소에 강제실시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89조).

15. 특허의 취소

特許許與後 48개월 이내에 실시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가 취소되어진다(제94조). 또 신규성이 없는 특허,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외의 자에 부여되었던 특허에 대해서 특허 취소의 청구를 자카르타의 지방재판소에 할 수 있다(제97조).

16. 정부에 의한 특허실시

인도네시아에 있어 그 사용이 국방 및 안전 보장상 중요하다고 정부가 판단한 경우에는 적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것에 의해 정부는 그 특허를 실시할 수가 있다(제104조).

17. 소특허제도

특허와 같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않아도 그의 형상·구조·조성에 의해 실용상의 가치가 있는것은 소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제6조). 권리기간은 소특허증 발행일로 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다(제10조). 소특허에 대한 심사의 거절에 대해서는 심판을 청구할 수가 없다(제111조). 또한, 특허기간의 연장과 강제실시권의 청

구는 할 수 없고 수수료의 납부는 불필요한 것으로 되어있다(제112조).

18. 특허침해

특허권자 및 라이선스소유자는 특허권의 침해자를 지방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제122조). 또 가처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규정도 있다(제123조).

의도적으로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禁固와 1억루피아 이하의 벌금(제126조), 의도적으로 소특허를 침해한 경우는 5년 이하의 禁固와 5천만루피아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제127조).

19. 경과규정

1981년 8월 1일 이후에 부여된 가출원은 1991년 8월 1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평특허법에 근거하여 재출원이 가능하고, 특허기간 기산일은 가출원의 접수일로 된다(제131조).

1981년 8월 1일 이전에 부여된 가출원은 모두 무효로 지정되어 진다(제131조).

〈白仁洪 記〉

案

發明特許資料 판매센터

内

本會는 發明特許 관계 資料 판매센터를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 韓國綜合展示場 (KOEX) 別館 2층 發明獎勵館內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活用바랍니다.

문의전화 : (서울) 551-5571~2

학생발명반 설치안내

문의처: 특허청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3-1 (우편번호 135-784)

전화번호: 568-8150~64 (교관), 568-6073 (직통) FAX번호: 553-9584